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4

발의연월일: 2021. 5. 17.

발 의 자:고용진・김경협・김수흥

김원이 · 김주영 · 신동근

안규백 · 안민석 · 양향자

이동주 • 이원욱 • 정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화석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예정임.

그런데 화석연료 및 전기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이전까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춘 자동차로서 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보급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 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③
터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5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